

통합적 관점에서 본 서구의 정의론

이찬훈*

【요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그러한 의견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정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구의 주요 정의론을 살펴보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올바른 정의론을 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서구 정의론을 더듬어보면 많은 논자들이 종종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만을 고집하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배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대립해 온 윤리 도덕 사상과 정의론들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밝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온 견해들을 불이不二적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사회), 동기와 결과, 의무와 목적, 옳음과 선 등을 대립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공리주의와 의무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호 배척이 아닌 상호 보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정의론, 칸트,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https://doi.org/10.34162/hefins.2021..27.001>

I. 머리말

예로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목표였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 검찰권 행사,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토지 투기 사태 등을 둘러싸고 정의, 공정, 공평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분출하였다. 그러한 의견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정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란스러운 정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런 취지에서 서구의 정의론을 살펴보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올바른 정의론을 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구에서 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플라톤부터였다. 그를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그것은 이후 서구의 정의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근대부터 정의 문제는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칸트의 도덕철학과 공리주의였다. 공리주의는 오랫동안 특히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대척점에는 칸트를 계승한 자유주의자들이 있었다. 그 후 앞선 정의론들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정의론을 정립해보고자 한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었다.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극단적으로 자유만을 내세우지 않고 평등의 요소도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롤스의 정의론이 발표된 이후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간에 정의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그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서구 정의론을 더듬어보면 논의의 당사자들이 종종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 견해만을 고집하고 자기와 다른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만 열중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대립해 온 윤리 도덕 사상과 정의론들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밝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온 견해들을 불이不二적 관점¹⁾에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사회), 동기와 결과, 의무와 목적, 옳음과 선 등을 대립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공리주의와 의무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호 배척이 아닌 상호보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정된 지면 속에서 서구 정의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선 플라톤부터 최근의 공동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서구 정의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주된 저서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다. 이 때문에 이에 관해 그동안 발표되어 온 수많은 논문 등에 대한 검토는 대부분 제외하고, 정의론과 연관된 주요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주저들을 직접 검토하고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주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자유주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이후 자유주의자들의 반박, 그리고 그 이후 양자 사이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까지 모두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분석을 통해 밝힌 통합적 관점을 기초로 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논쟁의 핵심 주제와 원론적인 해결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부분은 이후의 계속적 탐구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불이적 관점에 대해서는 이찬훈 (2002), ‘3부 불이 사상과 미래 문명’ 부분을 참조.

II. 자유로운 인간의 존엄과 의무 : 칸트의 의무론

서구에서 정의正義라는 문제는 그리스 시대 때부터 논의되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²⁾이란 예로부터 전해진 정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정의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주목할 점은 플라톤이 정의를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정의론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정의가 필요하며,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러하다고 보았다.³⁾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는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하지 않고 정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나 개인에서나 모두 그 구성 부분들이 각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정의는 각 부분이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목을 잘 발휘할 때 이루어지는 조화 상태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받아 정의의 문제를 행복과의 연관 속에서 논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그 전체가 행복의 문제를 논하는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 문제는 그것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고 보고, 행복은 이성에 따라서 영혼이 제대로 활동을 잘할 때 달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덕을 지적인 덕과 성격적인 덕, 두 가지라 하였다. 이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적인 덕을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용이라고 주장하였는데⁴⁾, 정의는 이 가운데 하나로, 자신과 타인 또는 관계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으로 보았다.

2) 플라톤, 천병희 역 (2019), p. 35.

3) 플라톤, 천병희 역 (2019), p. 89, p. 216 참조.

4)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2016), p. 66 참조.

지적인 덕은 이성이 지혜에 따라 관조적 활동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때에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즐거움을 곧 행복과 동일시하지 않고, 이성의 발휘에 도움이 되는 즐거움만을 행복과 관련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⁵⁾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 가운데 하나인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법을 지키는 것을 전체적인 정의라고 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러한 전체적인 정의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⁶⁾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부분적인 정의에 속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是正的 정의를 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 가운데서도 특히 분배적 정의 개념은 이후 서구의 정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분배의 몫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분과 계급의 차별을 받아들이고 있던 시대적 한계 등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로 후세에 넘겨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넘겨준 정의론의 이런 문제들은 서구에서 근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됨으로써 다양한 현대적 정의론이 전개된다.

신분적 차별에 따르던 전근대사회와 인간들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는 근대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과 정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대사회에서 인간 간의 관계라는 도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이 바로 칸트였다. 칸트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자신의 핵심적 문제로 삼았다. 칸트의 도덕 이론이

5)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2016), p.357 참조.

6)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2016), pp. 166-167 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부정의한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고 정의로운 것은 법을 지키는 것과 공정한 것으로 구분된다. … 한편은 부분으로서, 다른 한편은 전체로서 서로 다른 것이다.”

비록 분배적 정의 같은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그의 도덕 이론은 이후 서구의 자유주의 정의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정의를 둘러싼 현대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된다.

칸트의 도덕 이론은 그의 저서 『도덕형이상학의 기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와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에 잘 드러나 있다.⁷⁾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일체의 경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순수한 이성의 선형적 개념들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 필연성을 가진 도덕법칙을 정립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⁸⁾ 그런데 경험과의 완전한 단절, 순수한 선형성, 절대적 필연성 등에 대한 강조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의 강박관념과 같은 것으로서, 이후 볼 것처럼 칸트의 도덕 이론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진 도덕법칙의 근거를 칸트는 무제한으로 선택한 것, 최고선에서 찾는다. 칸트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무조건 선택하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택 의지뿐이라고 말한다.⁹⁾ 선택 의지는 어떤 목적의 달성 여부나 그것이 가져오는 유익함 등과 전혀 관계가 없이 선택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최고선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7) 칸트는 1785년에 자신의 도덕이론을 처음으로 논술한 『도덕형이상학의 기초』를 세상에 내놓았고, 이어서 1788년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새롭게 정리한 『실천이성비판』을 내놓았다. 그러나 두 저작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고, 필자가 보기에는 칸트의 도덕이론을 더 체계화하고 종합했다고 하는 『실천이성비판』보다 『도덕형이상학의 기초』가 칸트의 도덕이론을 더 일목요연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도덕형이상학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고, 『실천이성비판』의 자료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글에서 『도덕형이상학의 기초』의 번역본으로는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을 사용하였다. 『실천이성비판』의 번역본으로는 『실천이성비판』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2009)을 사용하였다.

8)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17 참조.

9)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27 :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택하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택 의지뿐이다.”

칸트는 선의지라는 최고선을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동기와 결과를 완전히 분리하고 동기만을 중시하는 동기론의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처럼 동기와 결과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극단적인 입장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선한 의도(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런 목표를 이루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칸트가 좋아하는 말로 하자면, ‘보편화 가능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와 결과는 서로 둘이 아닌 것으로서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의지를 갖고 행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도덕법칙, 도덕원칙, 행위의 준칙 등을 정할 때 행복이라는 목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의지에 도덕법칙을 세우려고 하는 칸트는 선의지를 의무와 연관 짓는다. 칸트에게 선의지란 어떤 것을 ‘의무이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의무인가? 의무는 이성이 우리의 의지에 부과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이성의 명령을 가언적 명령(법)과 정언적 명령(법)으로 나눈다. 가언적 명령이란 만약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조건적인 명령을 말한다. 정언적 명령은 다른 목적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¹⁰⁾ 가언적 명령들과는 달리 어떤 목적과도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정언적 명령을 칸트는 “도덕성의 명령(법칙)”¹¹⁾이라고 부른다. 칸트는 법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필연성을 지닌”¹²⁾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 때문에, 일정

10)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p. 60-61 참조.

11)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64.

12)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64.

한 목적의 추구하고 우연적인 조건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가언적 명령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고, 오직 정언적 명령만이 도덕법칙의 자격을 갖는다.

칸트는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 의무에 관한 정언적 명령법(정언명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그 준칙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¹³⁾

둘째, “네 인격 안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 안의 인간성까지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¹⁴⁾

셋째, “의지가 자기의 준칙에 의해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을 주는 것으로 생각(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¹⁵⁾

페이튼은 이 정언적 명법을 각각 ‘보편 법칙의 정식’,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의 정식’이라 부름으로써 그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¹⁶⁾

이 가운데 ‘자율의 정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인정하는 근대 사회의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칸트는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율성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근거라고 간주하였다. 단순히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면 인간이 특별히 존엄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칸트는 단순히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라고 간주하였다. 칸트는 자유는 결코 경험적 개념이 아니며 그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간주하였다.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이성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행위를 선택하는 도덕의 주체로 생각하고 행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상 우리는 인간으

13)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71.

14)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83.

15)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92.

16) H. J. 페이튼, 김성호 역 (1988), pp. 185-186 참조.

로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유가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가와 상관없이 도덕적 주체로서 우리가 존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유의 존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자유를 경험 개념이 아니라 이성의 이념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러한 이념을 전제하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¹⁷⁾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칸트의 이념은 이후 자유에 기초한 보편적인 인권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칸트는 인간의 자유와 자율을 얘기하면서 줄곧 인과법칙의 지배를 벗어난 예지적 존재로서의 이성의 자유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신분과 계급, 불합리한 전통 등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을 외적인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간주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모든 사회 역사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개인의 자유만 강조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유령적인 성격’¹⁸⁾의 원자론적 자아 개념을 낳을 수 있다. 모든 인과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강조하는 칸트에게는 이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나중에 칸트를 계승한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이런 위험은 실제로 현저히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개인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하는 관점을 일체의 목적과 결과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와 결합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동의 원칙은 개인의 선택일뿐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도 없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극단적인 주관주의나 상대주의, 회의주의나 허무주의와 통하게 된다.¹⁹⁾

어쨌든 평등하게 자유로운 인간들은 서로 어떠한 도덕적 관계를 맺어야만

17)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134, p. 117 참조.

18)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이진우 역 (1997), p. 62.

19) 고립적인 원자론적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인간을 독립적인 고독한 단독자라는 근본 개념에서 출발하는 실존주의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찬훈 (2002), ‘1부 실존과 인생’ 부분을 참조.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보편법칙의 정식’이라는 첫 번째 정언적 명령법이다. 보편법칙의 정식이라는 칸트의 정언적 명령법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그 행동의 원칙(준칙)을 과연 누구나가 언제든지 채택해도 좋은(또는 해야 하는) 보편적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숙고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편화 가능한 원칙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어떤 원칙은 왜 보편화 가능하며 어떤 원칙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적 자체의 정식’이라고 부르는 정언적 명령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언제나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합치하는 행동의 원칙은 도덕법칙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정언적 명령법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든 의무는 무조건적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명령)가 과연 보편화 가능한 의무(명령)이나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어떤 행위의 원칙을 놓고 그것이 보편화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칸트가 직접 보편화 가능한 무조건적인 의무들로 들었던 여러 가지 의무들을 검토해봄으로써 분명히 드러난다. 칸트는 정언적 명령법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의무로 네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예들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는 칸트의 의도와 달리 구체적인 의무들은 모두 조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첫 번째 예에서 칸트는 절망에 빠질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자살하려는

20) 칸트가 들고 있는 네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관련된 의무이다. 첫째, 계속되는 나쁜 일에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는 경우, 둘째, 거짓 약속으로 어려움을 빠져나오려는 경우, 셋째, 소질을 계발하려 하지 않고 즐거움만을 좇으려는 경우, 넷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려는 경우.

것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는 ‘자기애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감각은 삶을 촉진하도록 밀어주는 것인데 그 감각 때문에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법칙으로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²¹⁾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칸트의 이야기는 매우 어색하고 애매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고통이 극심하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자살을 해도 좋다’라는 것을 보편화 가능한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순적이어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의견이 다를 뿐이다. 칸트는 감각의 역할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문제는 지금의 경우 더 이상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체는 무조건 살아가기를 원하기만 하는 존재라고 가정하면,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는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살이 문제 되는 것이다. 자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인간은 살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언적 명령이다. 즉 이 명령은 행복이라는 인간 삶의 목적 같은 것을 고려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명령이다.²²⁾ 이런 예들을 통해 우리는 칸트의 의도와는 반대로 정언적 명령법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이나 욕구, 목적 등의 경험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칸트가 정언적 명령법이라고 부르는 원칙은 우리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분명 칸트는 중요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21) 이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72 참조.

22) 지면 관계로 나머지 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 예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정식화한 정언명법은 매우 추상적인 것들이다. 그것들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를 알려주지 못한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일 수 없다. 결국 의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따라 보편화할 수 있는 의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과 선택을 위해서는 이루려고 하는 목적,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칸트의 도덕 이론은 정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사람들 각자에게 알맞은 몫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각자에게 알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칸트의 도덕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자유를 본질로 하는 모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며, 존엄한 모든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모든 인간이 가진 권리들을 침해하지 말고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 인간이 모두 평등한 존재인데도 때에 따라 누구는 이렇게 취급하고 누구는 다르게 취급하지 말고 보편적 원칙에 따라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칸트가 분배 문제와 같은 정의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의 도덕 이론은 정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후 현대 서구의 정의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구 자유주의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칸트야말로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이성과 경험, 동기와 결과, 의무와 목적(행복), 자유와 인과성, 개인과 사회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맞짜를 분리하고 한쪽만을 중시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성과 경험을 분리하고 경험을 배제한 채 이성에만 의거해서 도덕법칙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과 경험을 둘 다 고려하는 통합적 입장을 견지해야만 한다. 동기와 결과, 의무와 목적(행복)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우리의

의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구체적인 의무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원칙에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행복과 같은 결과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개인과 사회(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 개인과 다른 모든 존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과 사회, 개체와 만물은 서로 불이적 존재이다. 이 전제 위에서 도덕과 의무의 문제, 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칸트의 도덕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를 계승한 현대 서구의 정의론들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자유주의 정의론 같은 곳에서는 다분히 비슷한 문제점들이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칸트 도덕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은 이후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도 그대로 견지되어야만 한다.

III. 다수의 이익 : 공리주의 정의론

칸트의 의무론과 대조를 이루며 서구의 현대 정의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공리주의 정의론이다. 벤담Jeremy Bentham은 공리성의 원리를 도덕 이론의 토대로 삼는다. 그에게 공리성의 원리란 이익이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이다.²³⁾ 벤담은 이 원리를 행위에 관한 단 하나의 정당한 근거라고 주장한다.²⁴⁾ 그러므로 우리는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²⁵⁾ 이 공리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벤담을 계승한 밀John Stuart Mill이나 시지윅Henry Sidgwick 또한 대동소이하다.

23) 제러미 벤담, 고정식 역 (2011), p. 28 참조.

24) 제러미 벤담, 고정식 역 (2011), p. 59 참조.

25) 제러미 벤담, 고정식 역 (2011), p. 30 참조.

그런데 공리주의자들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행복이라는 것을 곧 쾌락과 동일시한다. 이것은 공리성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벤담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드러나 있다 : “공리성이란 이익 당사자에게 이익·이득·쾌락·선·행복(현재의 사례에서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이다)을 낳거나 손해·해악·고통·악·불행이 발생하는 일을 막는 경향을 지닌, 어떤 대상에 들어있는 성질을 뜻한다.”²⁶⁾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서 지배받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곧 쾌락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고 쾌락만이 행위의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벤담에게 행위를 선택할 때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줄 쾌락의 총량이다. 밀과 시지윅도 행복과 쾌락을 동일하게 여기는 점은 벤담과 같다.

이처럼 행복을 쾌락과 곧바로 동일시하는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다. 행복과 쾌락을 구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행복을 기준으로 쾌락의 질을 평가하고 구분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쾌락이 똑같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쾌락에도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상식과 합치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통을 회피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곧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과 생명체들은 쾌락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피하며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며 살아나가기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생각이다.²⁷⁾

공리주의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구분하려 하였다. 흔히 ‘질적 쾌락주의자’라고 부르는 밀이 그 대표자이다. 그러나

26) 제러미 벤담, 고정식 역 (2011), p. 29.

27) 시지윅은 흄스가 옳은 행위의 궁극적 기준을 쾌락보다는 보존이거나 쾌락과 보존의 타협이라고 보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헨리 시지윅, 강준호 역 (2018), p. 213 참조. 이런 흄스의 견해가 쾌락을 행위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견해보다는 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밀의 주장들 속에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과 난점이 들어있다. 밀은 처음부터 행복을 증진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옳고 가치 있는 것이며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낳을수록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였다. 그렇게 되면 쾌락이 유일하게 옳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쾌락의 질을 구분하려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쾌락에 질적인 차이를 둘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쾌락 이외에 또 다른 가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쾌락에도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모순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행복과 쾌락을 처음부터 동일시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리주의를 ‘보편적 쾌락주의’라고 보서는 안 되고, ‘보편적 행복주의’로 규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피하고자 하는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행복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쾌락의 양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공리주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어쩌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최대다수의 행복(공리,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복(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어쩌서 다수의 행복을 최대화하도록 행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공리주의 원리의 타당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공리주의자들이 제시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이다. 그중 하나는 시지윅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행복(또는 쾌락)이 좋음(선) 이라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똑같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음의 특수한 부분인 나의 행복이 아니라 좋음 일반 즉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²⁸⁾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이기주의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를 택해야 할 완전히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줄

28) 헨리 시지윅, 강준호 역 (2018), pp. 689-690 참조.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쾌락이나 행복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쾌락이나 행복은 나에게 좋고, 타인이 느끼는 쾌락이나 행복은 그에게 좋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나의 쾌락이나 행복보다 타인의 쾌락이나 행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공리주의자들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회적 감정이다. 벤담은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동기는 어떤 사회적 동기라고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공감이나 자비심이라는 순전한 사회적 동기를 지니고 있고, 또한 대부분 친구에 대한 갈망과 평판에 대한 갈망이라는 반쯤 사회적인 동기도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동기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⁹⁾ 공리주의의 감정적 기초에 대한 이런 생각은 밀 또한 비슷하다.³⁰⁾

그러나 단순히 그런 사회적 감정의 존재가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 또는 의무의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행복을 성취하려는 개인적인 성향과 사회적 감정이 모두 있을 수 있다. 어떤 개인에게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것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진정한 근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론적 진리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개체 생명체로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며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인간,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들 전체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존재론적 진리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자기 개체만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에 어긋난다. 그것은

29) 이상과 같은 사회적 동기와 의무에 대한 벤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러미 벤담, 고정식 역 (2011), pp. 445-447 참조.

30)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19), p. 74 참조.

크게 보면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며, 조화로운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결국은 자신의 목적 추구 자체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직 전체의 행복만을 고려하고 개체로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행복을 도외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자신의 행복과 모두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면서 양자를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도적 선택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³¹⁾

공리주의자들은 경험과 상관없는 직관에 기초한 절대적인 도덕법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또한 그러한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무조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예컨대 시지윅이 보기에는 칸트가 말하는 정언적 명령법과 같은 절대적인 실천적 원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적용하여 어떤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³²⁾ 그러므로 그것은 최대다수의 행복을 고려하는 공리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 시지윅은 또한 소위 자연권이라 부르는 자유의 권리나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들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리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³⁾ 시지윅은 공리주의적 방법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무들에 대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규칙들이 충돌할 경우에”³⁴⁾ 그것들을

31) 공리주의의 원리가 진정으로 기초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런 존재론적 진리라는 이런 생각은 부분적으로나마 밀에게도 포함되어 있다. 밀은 ‘사회상태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누구든지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또한 ‘사회 상태의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의 존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인간의 운명을 구성하는 큰 인자가 된다’고도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는 사회와의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진리와 그에 기초한 공리주의의 원리라는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19), p. 75 참조.

32) 헨리 시지윅, 강준호 역 (2018), p. 685.

33) 헨리 시지윅, 강준호 역 (2018), pp. 510-515 참조.

34) 헨리 시지윅, 강준호 역 (2018), p. 757.

중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자들은 공리성의 원리를 일반적인 도덕 규칙뿐 아니라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의란 ‘각자에게 알맞은 몫(응당한 몫, 응분)을 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밀은 다양한 의견 사이의 혼란 극복을 위해서는 공리주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의라는 도덕적 의무는 효용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시지워 역시 마찬가지다. 공리주의자들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분배 몫을 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공적(공과)이나 필요 등의 잣대를 동원해서 판단해야만 한다고 간주하지만, 어떤 잣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역시 공리성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도덕 이론이며,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장 포괄적인 일차적 기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우선 그것은 결과만을 중시하고 동기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결과만 좋으면 동기나 수단은 아무래도 좋으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공리주의가 실제로 공리를 도모하기 위해 인격과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기 쉽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고 동기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올바른지 못한 수단의 사용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문제점을 공리주의가 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복의 총합만을 중시하지 그것의 구체적인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공리주의의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행복의 최대 총량만을 중시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라든가, 공과 등을 적절히 고려하기 어렵다. 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같은 문제도

35)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19), pp. 131-135 참조.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말한 바와 같이 행위규칙이 보편화 가능한 것이며 인간을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냐를 따지는 의무론적 원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덕법칙이라 부르는 것들의 불완전함과 충돌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결과론과 총량주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칸트적 의무론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IV. 공정으로서의 정의 : 롤스의 자유주의 정의론

오랫동안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사회적 원리이자 정의에 관한 원칙으로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공리주의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정의론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현대 서구 사회의 정의론 논의를 선도한 사람이 존 롤스(John Rawls)³⁶⁾이다. 롤스는 그의 주저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공리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³⁷⁾ 롤스가 보기에는 정의야말로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인데,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론을 제공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롤스는 “공리주의에 대한 합당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의관”³⁸⁾을 제시하려고 한다.

롤스는 칸트의 전통을 계승하며 정의의 원칙을 정립하려 한다. 다만

36) 존 롤스(John Rawls)의 이름은 존 롤즈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존 롤스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단 번역서의 저자 이름 표기는 번역서의 표기에 따랐다.

37)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6 참조.

38)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6.

칸트의 도덕 이론은 보편화 가능한 이성의 무조건적인 의무라는 다분히 추상적인 의무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에 따라 공적 가치의 분배라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³⁹⁾ 이를 위해 롤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계약당사자로 삼아 그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⁴⁰⁾라고 부른다.

공정한 사회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롤스의 출발점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또는 평등한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상태”⁴¹⁾에 해당한다. 거기서 정의 원칙을 정하려 하는 계약당사자들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상의 위치, 소질이나 능력,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 등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것을 가리켜 계약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무지의 장막-필자)”⁴²⁾ 속에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⁴³⁾ 롤스는 원초적 상황 속에 있는 계약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오직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합리적 계산에서 분배의 원칙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 없으므로, 거기서 정한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합의만이 정당화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이 된다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원초적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채택하게 될 정의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 우선 롤스는 계약당사자들이 합리적이면서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39)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45 참조.

40)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45.

41) 두 글귀 모두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46.

42)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46.

43)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95 참조.

그들은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악의 경우가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을 그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부른다.⁴⁴⁾ 이 원칙에 따라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계약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정의의 원칙을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이라 얘기하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고 나누어 보면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을 먼저 잠정적으로 정의했다가 나중에 조금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⁴⁵⁾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⁴⁶⁾

정의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중 (b)의 원칙은 ‘기회 균등의 원칙’, 두 번째 중 (a)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들 가운데서 더 우선적인 것은 언급한 순서대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가장 우선적인 제1원칙은 자유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고 형식적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자연적 자유 체제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적 여건의 평등을 위한 노력이 없어 정의 원칙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원하는 직위 같은 것들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개방되어서는

44)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216. 최소 극대화의 원칙 : “우리는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최소)가 다른 대안들이 갖는 최악의 결과에 비해 가장 우월할 경우 (극대화)에 그 대안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

45)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05.

46)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32.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획득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⁴⁷⁾ 그러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이 입장 역시 아직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이 결정되는 점이라든가, 가족 제도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같은 문제들은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최소수혜자)들을 우선 배려하자는 차등의 원칙이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결합하는 것을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이라고 한다.⁴⁸⁾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롤스가 개개인이 가진 천부적 재능이나 자질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주는 혜택을 최소수혜자의 선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⁴⁹⁾ 그리고 롤스는 최소수혜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이런 차등의 원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박애라는 관념에 부합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⁵⁰⁾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채택하게 되는 정의의 원칙을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특정한 목적이나 그들이 처한 상황 등과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만을 고려하여 얻은 것이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언명령과 유사하다는 것이다.⁵¹⁾ 이런 점에서 롤스는 좋음(선)을 우선시하는 목적론이 아니라 옳음을 좋음보다 우선시하는 의무론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⁵²⁾

롤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중히 여기는

47)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06, p. 120 참조.

48)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06, p. 123 참조.

49)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p. 152-153 참조.

50)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06, p. 157 참조.

51)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 106, pp. 340-341 참조.

52)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pp. 69-70, p. 106 참조.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담고 있어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극단적으로 자유만을 내세우지 않고 평등의 요소를 도입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한 점은 매우 소중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정의론은 그 전개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모순점을 안고 있어서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 평등, 박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선 원초적 입장(원초적 상황)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원초적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롤스는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쪽을 선택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정의의 원칙은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합의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결국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것,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 모두는 자신의 손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전략에서 나온 원칙일 뿐이다.

롤스가 원초적 입장에 기초해 절차적 정의 원칙을 세우려 한 것은 경험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개인의 직관에 의존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을 정립하려 했던 칸트의 시도와 비슷하다. 이 점에서 롤스가 포함하고 있는 문제 역시 칸트의 문제와 유사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추상적 원칙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공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를 결코 알 수 없다.

타인에 대한 앎과 관심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이 약자를 우선

배려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타인과 완전히 절연된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는 순간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애초부터 불가능해진다. 반면에 그런 개인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합리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인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말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인간은 이기적인 계산이라는 합리성에만 따르지 않고 다른 욕망이나 감정, 이룰테면 투기적 심리, 동정이나 연민 등의 감정, 그리고 다양한 가치판단에 따를 수도 있다. 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서로의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은 얼마든지 다소 위험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배분의 원칙을 정하려 할 수 있다.

개인을 타자로부터 절연된 고립된 존재로 규정하는 한, 개인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공리를 추구해야 할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공리주의 부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 세상의 어떤 인간,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들 전체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존재론적 진리에 근거해야만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존재론적 진리에서 출발해야만 모든 사람의 평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도 가능해진다.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한 롤스 자신의 얘기 속에도 이런 관점이 부분적으로는 들어있다. 다만 그런 관점은 원초적 입장에서 전제하고 있고 자유의 최고 우선성이 포함하고 있는 고립적 개인이라는 주된 관점과 모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롤스는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을 계승하고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좋음(선)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공리의 요소를 정의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로 그는 정의 원칙 간에 우선권이나 상호 충돌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제시할 수가 없게 된다. 앞에서 우리는 칸트와 관련하여 도덕법칙이라 부르는 것들의 불완전함과 충돌 가능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때로는 개인의 자유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원칙 같은 것이 서로 상충할 수 있고, 그때 무조건 개인의 자유만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리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연대와 박애 : 공동체주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이 발표된 이후 그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롤스의 자유주의 정의론에 대해 제기된 공동체주의자들의 핵심적 주장,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반박의 주된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정의론은, 앞서 칸트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통합적 관점의 정의론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자유주의 정의론의 출발점은 자유로운 인간(개인)이라는 이념이다. 그 선구자인 칸트는 사회적 요인을 비롯한 모든 인과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월적 주체를 전제로 하였다. 칸트를 계승한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들도 마찬가지다.⁵³⁾ 그것은 소위 “무속박적 자아”⁵⁴⁾(무연고적 자아)이다. 일체의 외적인 상황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에게는 어떠한 객관적인 목적, 좋음(선)도 있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은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 정의론은

53) 마이클 샌델, 이양수 역 (2012), pp. 28-29 참조.

54) 마이클 샌델, 안규남 역 (2012), p. 29.

옳음을 좋음보다 우선시하는 의무론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의 합당성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개인을 모든 객관적인 외적 요인 또는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절연시키는 순간, 개인의 선택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자체는 원천봉쇄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이 결코 고립된 단독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관계가 모여 이루어진 존재이다. 인간을 길러내고 계속해서 인간 삶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⁵⁵⁾ 정의의 문제 역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풀어나갈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의 문제를 포함한 도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을 반드시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 가운데 매킨타이어는 ‘서사적 인간’ 개념을 얘기한다.⁵⁶⁾ 이것은 인간이 각자의 삶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의 공동체적 맥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고 그에 기초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⁵⁷⁾ 테일러 역시 우리의 자아는 서사를 구성하는 ‘대화의 망’, 언어공동체 속에서, 다른 자아들 사이에서, 즉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⁵⁸⁾ 그리고 이러한 자아정체성에 따라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귀중한 것인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찬성하고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⁵⁹⁾할 수 있다.

샌델은 롤스와는 달리 ‘상호주관적 자아’, ‘간주관적 자아’라는 개념을

55) 이찬훈 (2002), p. 45 참조.

56)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이진우 역 (1997), p. 318 참조.

57)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이진우 역 (1997), p. 324 참조.

58) 찰스 테일러, 권기돈·하주영 역 (2015), p. 80, p. 83 참조.

59) 찰스 테일러, 권기돈·하주영 역 (2015), p. 65.

상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공동체 개념, 유기적 전체로서의 사회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자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⁶⁰⁾ 이에 따르면 공동체는 자아의 가능한 목표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자체의 본질 요소와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⁶¹⁾ 샌델은 인간을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자아로 이해해야만 타인들에 대한 우리의 많은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인간을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으로만 이해해서는 우리들의 많은 시민적 의무들과 도덕적·정치적 유대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⁶²⁾

공동체주의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를 규정하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무엇이 좋은 것(선)이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해야 하는가를 배운다. 개인은 그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가지 좋음과 가치 가운데서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해나갈 수 있다. 분배적 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들 사이에 배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는, 그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배분을 문제 삼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에 의해 규정된다.

왈쩌는 “상당한 사회적 가치(재화·필자)들은, 상당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⁶³⁾고 주장한다. 각 분배 영역의 특성을 존중해서 분배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분배의 정의이다. 이것을 왈쩌는 ‘다원적 평등’이라 부른다.⁶⁴⁾ 그러나 하나의

60) 마이클 샌델, 이양수 역 (2012), pp. 165-166 참조.

61) 마이클 샌델, 이양수 역 (2012), p. 167 참조.

62) 마이클 샌델, 안규남 역 (2012), p. 30 참조.

63)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역 (1999), p. 32.

64) 이것을 왈쩌는 이렇게 말한다 : “다원적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클 왈쩌,

분배 영역이라도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할 것이며, 각 기준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왈쩌는 어떤 재화의 분배 원칙과 기준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것을 활발하게 표현하고 토론하여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간주한다.⁶⁵⁾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가치, 공유된 이해 등을 확인하고 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유주의의 관점은 그런 것과 상당히 배치된다. 공동체의 가치, 공유된 이해 등을 기초로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도 개개인의 가치와 선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의 선택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관점이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입장으로 귀결되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샌텔은 국가의 중립성을 주장하며 공정한 절차만을 강조하는 정치철학을 “절차적 공화정”⁶⁶⁾이라고 부른다. 절차적 공화정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종교적 논의를 추방함으로써 정치와 법을 실질적인 도덕적 논쟁으로부터 분리시킨다.⁶⁷⁾ 도덕이나 종교, 공적인 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절차적 공화정의 정치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소하고 시시한 사적인 문제들로 돌려 버린다.⁶⁸⁾ 이러한 국가 중립성, 절차적 공화정이라는 관념이 정치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진정한 자치가 상실되고 공동체가 현저히

정원섭 외 역 (1999), p. 56.

65)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역 (1999), p. 151, p. 473 참조.

66) 마이클 샌텔, 안규남 역 (2012), p. 17.

67) 마이클 샌텔, 안규남 역 (2012), p. 41, p. 276 참조.

68) 마이클 샌텔, 안규남 역 (2012), p. 428 참조.

약화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불만이다.⁶⁹⁾ 샌텔은 국가가 중립을 지키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동료 시민들이 함께 공익에 관해 숙고하고 정치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공화주의적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⁰⁾ 그것은 시민들 속에 자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덕과 자질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공동선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유주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부터 다시 여러 가지 반박이 제기되었고, 양 진영 사이의 논쟁이 때로는 대립하고 또 때로는 서로 조금씩 수렴하기도 하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의 공격이 자유주의적 자아관을 오해하고 과장하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자유주의가 개인을 일체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반박 중 하나는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신이 설정했던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루는 정치적 정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자아관을 다른 사회적 영역에까지 적용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⁷¹⁾ 또 다른 반박은 킴리카와 마세도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모든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언제나 비판적 숙고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라는 것이다.⁷²⁾

69) 마이클 샌텔, 안규남 역 (2012), p. 16 참조.

70) 마이클 샌텔, 안규남 역 (2012), p. 18 참조.

71) John Rawls, 장동진 역 (1999), pp. 12-13 참조.

72) 자유주의적 자아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킴리카와 마세도의 이런 주장과 앞서 말한 롤스의 대응에 대해서는 박정순 (1999), pp. 27-28 참조.

공동체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와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주의의 관점이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과 권리 같은 것을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⁷³⁾ 또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중립성을 비판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간여 정책을 옹호하는 공동체주의는 자칫 독재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의 횡포라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⁷⁴⁾ 공동체주의는 각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목적과 가치 관념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 속에는 자유주의자들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왈쩌는 공동체의 가치가 개인들에게 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그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매킨타이어는 인간의 자아정체성과 선 관념 등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되지만, 인간이 그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은 거기서 출발하면서도 선과 보편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⁵⁾

롤스의 『정의론』을 계기로 활발하게 전개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은 한편으로는 서로 상대가 포함하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존재하는 오해를 해명하고 서로 수렴하고 종합할 수 있는 계기들도 제공하였다.

사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종합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여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고 서로의

73) 이에 관해서는 이충한이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샌델이 추구하는 공동선의 정치가 도덕적 다수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결국 자유주의가 우려하는 불관용에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그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거트만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이충한 (2013), p. 172 참조.

74) 박정순 (1999), p. 54 참조.

75)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이진우 역 (1997), pp. 325-326 참조.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와 공동체적 가치(공리, 공익, 공동선)를 중시한다. 종합의 길은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데 있다. 이것은 사실 자유주의가 말하는 개인이 완전한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인간은 사회역사적 공동체에서 출발하면서도 보편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 속에도 포함돼있는 관점이다.

모든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개인이 가진 수많은 생각과 가치 개념들 역시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개인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으로 공동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삶, 개인이 추구하는 바와 실천이 공동체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가치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적이다. 그 때문에 개인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으며 이 때문에 개인에게는 상당한 자유와 자율성의 영역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때 개인과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대부분 어느 한쪽을 절대화하는 데서 발생한다.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어느 쪽도 절대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항상 분명히 고수한다면 원리적 차원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해소될 수 있다. 자신만 옳다고 하면서 죽자고 싸우는 태도만 바뀌도 많은 갈등과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 이 원칙을 어기는 건해는 극단적인 것으로 배제하면 된다.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원리적인 차원에서 대립시키는 것을 그만둔다면, 남는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양 요소를 어떻게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개인의 몫의 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개인의 능력과 공적(노력과 업적)이라고 간주한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그동안 그가 기울인 노력과 그 결과로 성취한 업적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그에 합당한 몫을 배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몫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공적을 순전히 개인의 덕 또는 개인의 탓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것은 다시 개인을 절대화시키는 오류에 떨어진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획득된 것이고, 어떤 능력이 어느 만큼의 평가를 받느냐는 것도 다분히 사회적 관계에 달려 있다. 개인이 이룩한 모든 성과 역시 다른 수많은 사람의 덕과 협력이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배타적 개체주의와 그에 기초한 공적주의의 잘못을 벗어나는 길은 모든 개인이 오직 공동체 속에서 떨어질 수 없이 서로 연관되고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철저히 새기는 것이다.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임은 공적주의에 대한 샌텔의 비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샌텔은 성공을 개인의 재능 또는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능력주의와 공적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개인이 어떤 재능을 가진 것 자체가 우연적이고 그에 의한 성공 역시 수많은 우연 덕이므로 그 대가를 개인이 당연히 차지할 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공동체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⁶⁾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쩌서 몫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 소극적 입장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본래부터 공동체와 둘이 아닌 존재이며,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데에도 공동체 모두의 도움과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실패한 사람, 불우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특히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분명히

76) 마이클 샌텔, 함규진 역 (2020), p. 353 참조.

인식해야만 한다.⁷⁷⁾ 능력주의와 공적주의에 대한 샌텔의 비판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점은 그가 개인과 공동체의 존재론적인 불이적 상호관계를 철저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몫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공동선과 같은 것들이라고 간주한다. 그런 것의 달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개인의 몫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이나 공적에 따라서만 몫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 고려하여 개인의 몫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대화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게 된다.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필요하니 모두 이만큼의 몫을 받아들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무시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분배 몫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때로는 능력주의나 공적주의라는 자유주의와 대립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공리와 공익,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와 대립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몫을 개인이 받아야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것은 공리나 공동선 같은 공동체의 입장과 상관없이 개인이 권리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통하게 된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자칫 원리적 차원에서 대립할 수도 있고, 원리적 차원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해놓고도, 구체적인 분배 정의를 논할 때 각자의 입장만을 절대시함으로써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다시 필요한 것은 양자를 모두 고려해서 몫을 조정하는 일이다. 물론 그 양자를 모두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개인의 몫을 할당해야

77) 김정희원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오직 재능이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행하고 있는 샌텔은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의존성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잘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희원, 「마이클 샌텔이 진 보라는 착각 - 능력주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 『프레시안』, 2021.03.09 참조.

하는가는 경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경우에 공정하고 합당한 분배 정의를 결정해 줄 도깨비방망이는 아무 데도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당사자들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숙고하고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두 함께 참여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의 절차가 중요하다.⁷⁸⁾ 다원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장일치의 보편적 합의와 지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그를 통해 활발히 논의하고 다수의 합의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합의는 상당한 갈등, 대립, 극복, 타협,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조차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때문에 모든 합의는 잠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 제기와 재논의의 통로를 열어두고 상황과 상식의 변화에 따라 거듭 수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이견들을 일회적인 공적 토론이나 정치적 제도를 통해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일상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만나고 공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샌델은 다양한 시민 교육 기관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국가와 같은 거대한 규모에서 분배 정의 문제의 조정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당한 형식성과 추상성을 띠지 않을 수 없고, 충분히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분배 정의를 포함한 인간 간의 올바른 도덕적·정치적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의존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공동체 속에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국가에

78) 벨라미(Bellamy)와 굴드(Gould) 등도 참여의 권리와 절차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비환 (2005), pp. 92-93, pp. 106-107 참조. 또 하버마스 역시 ‘대화적 절차’를 중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찰스 테일러, 권기돈·하주영 역 (2015), p. 184 참조.

속하면서도 상당한 자치와 자율의 능력이 있는 작은 규모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⁷⁹⁾

V. 맺는말

근대 이후 많은 도덕 철학자는 자신이 내세우는 하나의 원리로 모든 인간의 바람직한 삶과 인간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도덕 규칙 역시 하나의 법칙으로서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인간들의 관계,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 및 가치관,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기 짝이 없게 얽혀 있는 현실의 경험세계에 들어맞을 수 없는 이념이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도덕 원리들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당사자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종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원리는 다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서 다뤘던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 할 수 있다. 보편화 가능성과 공리의 원리,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이라는 가치의 종합과 적절한 적용을 통해서만 도덕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철학자와 이론가들은 완벽한 체계화와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이론적 강박 때문에 한쪽 극단만을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반인들은 그와는 다른 이유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주장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정의가

79) 이러한 작은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샌델과 왈쩌 등 여러 공동체주의자들이 역설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 안규남 역 (2012), p. 456;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역 (1999), p. 70 참조.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는 많은 사람이 어떤 사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항의할 때이다. 이러한 항의에는 실제로 정의롭지 못한 사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저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나 맹목적인 정치적 이념 등이 개재되었거나 그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때도 많다. 공정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분노 때문이든 걸려있는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념 때문이든 비판과 항의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는다. 여기에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의 개념 내지는 정의론이다. 그러므로 논쟁은 다시 올바른 정의 개념과 문제의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가 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이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그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잘못된 행동이나 제도를 수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합의는 잠정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언제나 수용하고 다시 논의해나가는 열린 자세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바람직하다 여기는 목적을 추구한다. 그런 삶의 가치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식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와 관련돼 있다. 자유와 고귀한 인격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자신의 존재 근거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와의 연관에서 봤을 때 공리(공익, 공동선)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 가능성에 기초한 의무에도 어긋나지 않는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의 권리와 공리,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 어느 것도 버릴 수 없고 양자의 조화로운 종합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앞세우는 자유주의이다. 오늘날 잘 사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가치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 때문에 공리와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현실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종합, 올바른 정의는 기계적으로 중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비환 (2005), 『자유지상주의자들 -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정희원 (2021), 「마이클 샌델이 진보라는 착각 - 능력주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 『프레시안』, 2021.03.09.
- 박정순 (1999), 「자유주의의 건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철학연구회 99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찬훈 (2002), 『둘이 아닌 세상』, 서울 : 이후.
- 이충한 (2013),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 - 롤즈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마이클 샌델 (1996), 안규남 역 (2012), 『민주주의의 불만 -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 서울: 동녘.
- 마이클 샌델 (1982), 이양수 역 (2012), 『정의의 한계』, 서울: 멜론.
- 마이클 샌델 (2020), 함규진 역 (2020),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미래엔.
- 마이클 왈쩌 (1983), 정원섭 외 역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 현실사.
-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2016), 『니코마코스 윤리학』, 길.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1981), 이진우 역 (1997),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 이마누엘 칸트 (1785), 이원봉 역 (2002),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 임마누엘 칸트 (1788), 백종현 역 (2009),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 제러미 벤담 (1789), 고정식 역 (2011),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 나남.
- 존 롤즈 (1971), 황경식 역 (2003), 『정의론』, 이학사.
- 존 스튜어트 밀 (1863), 서병훈 역 (2019), 『공리주의』, 책세상.
- 찰스 테일러 (1989), 권기돈·하주영 역 (2015), 『자아의 원천들』, 새물결.
- 플라톤, 천병희 역 (2019), 『국가』, 서광사.
- 헨리 시지윅 (1874), 강준호 역 (2018), 『윤리학의 방법』, 아카넷.
- H. J. 페이트 (1947), 김성호 역 (1988), 『칸트의 도덕철학』, 서광사.
- John Rawls (1993), 장동진 역 (1999),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Abstract】

A Reflection on Western Theories of Justice: From an Integrative Point of View

Lee, Chan Hun

Recently, in Korean society, numerous opinions are erupting around the issue of justice. Such opinions are based on different concepts of justice. In this article, I tried to examine the major theories of justice in the West, to establish a correct theory of justice and to find a way to realize a just society by reviewing the issues that have been at issue. Looking at the Western theories of justice, we can see that the problem arises from many scholars often insisting on views that are too biased to one side and rejecting views that are different from their own. In this article, I tried to reveal what kind of biases the ethical moral ideas and theories of justice that have been opposed so far have and what problems arise from them.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 tried to clarify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views that have been regarded as opposed to each other from an indistinguishable point of view.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society), motives and results, duties and purposes, right and good, etc., should be integrated from the viewpoint of not only looking at them in opposition, but as being inseparable from each other. In this paper, it has been revealed that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complementary and complementary rather than mutual exclusion of utilitarianism and deontology,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Keywords】 Theory of Justice, Kant, Utilitarianism, Liberalism, Communitarianism

논문 투고일: 2021. 07. 21

심사 완료일: 2021. 10. 18

게재 확정일: 2021. 10. 18

